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대응한 중소기업정책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10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대응한 중소기업시책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5. 09. 05.
3. 회부연월일 : 2025. 09.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배송·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대응한 중소기업시책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u><신설></u>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 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 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¹⁾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배송·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또한,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²⁾에서는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우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악화 해소가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이미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2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기보다는 제1항에 개정안의 내용이 함께 규정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3